

조리사 면허증 발급 · 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 일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면허증 번호	제 호 (자격취득일:)		
분실사유			

「식품위생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·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·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p>1. 면허신청</p> <p>가.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,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) 1장</p> <p>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가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</p> <p>다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(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) 및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</p> <p>2. 재발급</p> <p>가. 사진 2장(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)</p> <p>나. 면허증(흠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	수수료 발급: 5,500원 재발급: 3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(면허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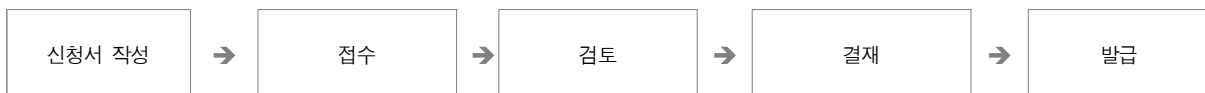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(신고)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(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)